

항 소(상 고) 취 하 서

사 건 2000고합 000호 00

피 고 인(항소인) ○ ○ ○

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인(항소인) ○ ○ ○ (인)

○ ○ 고 등 법 원(형사항소○부) 귀 중

제출기관	상소법원{**아래(1)참조}(형사소송법 353조)		oo _l (100 (100 (100 (100 (100 (100 (100 (10
취하권자	※ 아래(2)참조	관 할	상소법원. 단, 소송기록이 상소 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
제출부수	취하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349~356조
피고인의 동 의	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음(형사소송법 351조)		
상소포기 방 식	서면으로 포기해야함. 단,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(형사소송법 352조1항)		
상소포기 효 과	재상소의 금지(형사소송법 354조)		

※ (1) 제출기관(형사소송법 355, 344조)

- 1.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취하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
- 2. 피고인이 상소취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

※ (2) 취하권자(형사소송법 349조)

- 1. 검사
- 2. 피고인
- 3. 항고권자(형사소송법 349, 339조) 단, 피고인 또는 항고권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 에 대하여는 포기할 수 없음(형사소송법 349조)